

창원지방법원 2022. 5. 19 선고 2020가합44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남

담당변호사 김용준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청률

담당변호사 석지혜, 김규진, 이동명, 이양래

변론 종결 2022. 4. 14.

판결 선고 2022. 5.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C(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3. 21.에 한 재산분할 합의 및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21. 한 재산분할 합의를 360,000,000원의 범위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는 김해시 D 전 628m², E 전 1,441m², F 임야 2,268m² 중 2,268분의 2,218 지분, G 임야 80m²(2020. 5. 8. '도로'로 지목변경), H 임야 42m², I 묘지 692m², J 묘지 270m²(2020. 5. 8. '도로'로 지목변경), K 묘지 20m²(이하 '이 사건 L리 토지들'이라 하고, 필요한 경우 번지로 특정한다)의 소유자였는데, C 앞으로 위 토지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와 C은 1998. 2. 11. 혼인하였고, 2017. 3. 21. 이혼하였다.

나. 원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L리 토지들 관련 경과

1) C은 원고의 소유였던 이 사건 L리 토지들에 관하여 2016. 9.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6. 9. 21. 이 사건 F, G, H, I, J, K 토지에 관한, 2016. 10. 20. 이 사건 D, E토지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9. 4. 2. C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9가합272호로 이 사건 L리 토지들에 관한 매매잔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4. 16. C이 이 사건 L리 토지들의 공동매수인으로 추가되었음을 이유로, 'C은 원고에게 위 토지에 관한 매매잔대금 3억 6,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C이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나11622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1. 4. 1.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은 2021. 4. 16. 확정되었다.

다. C과 피고의 이혼 및 재산분할 경과

1) 피고는 2017. 1. 17. C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7드합10061호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와 C 사이에 2017. 3. 21. 'C은 피고에게 아래표 순번 1 내지 3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2017. 5. 30.까지 이행한다1) '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하였다(이하 '2017. 3. 21. 재산분할'이라 한다). C은 2017. 8. 21. 피고와 사이에 추가로 아래표 순번 4 부동산을 피고에게 재산분할하여 주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이하 '2017. 8. 21. 재산분할'이라 한다).

1	별지 목록 제1항 부동산	2017. 3. 21.
2	별지 목록 제2항 부동산	
3	별지 목록 제3항 부동산	
4	별지 목록 제4항 부동산	2017. 8. 21.

2) 피고는 2017. 9. 7.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7. 3. 21.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21.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L리 토지들의 매수인인 N가 2019년경 사망할 무렵까지 매수인을 N로 인식하고 있었고, N가 사망한 이후인 2019. 4. 2. C에 대한 매매잔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 무렵인 2017. 3. 21. 및 2017. 8. 21.경에는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

나. 판단

C이 2016. 9.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6. 9. 21. 이 사건 F, G, H, I, J, K 토지에 관한, 2016. 10. 20. 이 사건 D, E 토지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 9-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이 이 사건 L리 토지들의 공동매수인으로 2016. 10. 20. 원고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의 재산분할 무렵 원고가 C에 대하여 이 사건 L리 토지들에 관한 매매잔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C의 사해행위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이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의 기여부분인 50%에 상당하는 각 지분 1/2를 초과하여 피고에게 넘겨준 부분은 과대한 재산분할이므로,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지분 1/2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설령 2017. 3. 21.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2017. 8. 21. 재산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리

1)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참조).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양도한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고 할 것이고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할 때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7. 18. 선고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상 명백하므로 재산분할자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거나 또는 어떤 재산을 분할한다면 무자력이 되는 경우에도 분할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및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참조).

다. 2017. 3. 21.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1) 2017. 3. 21. 당시 C의 적극재산 가)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7. 3. 21. 재산분할 무렵 C 소유 부동산은 아래표 부동산 목록과 같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별지 목록 제1항 부동산	276,000,000원 (○조합)	증거 없음 (이하 같음)
2	별지 목록 제2항 부동산	96,000,000원 (○조합)	
3	별지 목록 제3항 부동산	372,000,000원 (P은행)	
4	별지 목록 제4항 부동산	840,000,000원 (○조합)	
5	김해시 M답 2631.4m ²	144,000,000원 (○조합)	
6	창녕군 Q 임야 71071㎡ 중 지분 8926/71071	144,000,000원 (○조합)2) 위 순번 3,4 토지와 공동담보	
7	R 임야 640 m ²		
8	S 임야 657 m ²		
9	T 임야 710m ²		
10	이 사건 D 토지	678,000,000원 (P은행)	565,000,000원 (P은행)
11	이 사건 E 토지		
12	이 사건 F 토지	30,000,000원 (U)	360,000,000원 (원고)
13	이 사건 G 토지		
14	이 사건 I 토지		
15	이 사건 J 토지		
16	이 사건 K 토지		
17	이 사건 L 토지		
18	김해시 V 임야 11408㎡ 중 지분 3355.4/11408	678,000,000원 (P은행)3) 위 순번 10 내지 17 토지와 공동담보	
19	W 전 168m ²	1,290,000,000원 (P은행)	885,000,000원 (P은행)4) 2016. 4. 15. 1,075,000,000원 차용하고 일부 원금 상환하여 2017. 3. 21. 기준 885,000,000원(갑 제11-7호증)
20	X 목장용지 4939m ²		
합계	3,756,000,000원	2,950,000,000원	

나) 위 가)항의 C 소유 부동산의 각 가액에 관하여, 2017. 3. 21. 당시 위 각 부동산의 시가를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2017. 3. 21. 당시 C의 소극재산 가) 갑 제1 내지 3, 5, 11 내지 14, 1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7. 3. 21. 당시 C의 소극재산 합계는 3,196,000,000원임을 인정할 수 있다.

1	P은행에 대한 대출채무	885,000,000원
2	P은행에 대한 대출채무	565,000,000원
3	U에 대한 차용금채무	30,000,000원
4	원고에 대한 토지매매 잔대금채무	360,000,000원
5	O조합에 대한 대출채무	1,356,000,000원5) O조합에 대한 피담보채권액에 관한 증거가 없으나, 원고에게 유리하게 조합에 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합계를 채무액으로 가정한다.
합계	3,196,000,000원	

나) 원고는 Y에 대한 차용금 채무 100,000,000원, 김해시에 대한 주민세 채무 585,500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보험료 채무 2,897,340원도 2017. 3. 21. 무렵 C의 소극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7, 20, 21호증, 을 제4-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Y에 대한 차용금 채무는 2020. 3. 23. 발생하였고, 김해시에 대한 주민세 채무는 2020년경 발생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보험료 채무는 2018. 2.경부터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3) 사해행위 여부 판단 가) 이 무렵 피고 소유의 부동산, 즉 적극재산 목록은 앞의 1)항에서 본 바와 같고, 이 무렵 피고의 채무가 3,196,000,000원인 사실은 앞의 2)항에서 본 바와 같으며, 2017. 3. 21. 재산분할에 의하여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나) 그러나 한편, 갑 제1 내지 3, 5, 11 내지 16, 18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가)항의 사실만으로 2017. 3. 21. 재산분할로 인하여 C이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켰다거나, 위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2017. 3. 21. 무렵 C의 채무는 3,196,000,000원이었는데, 원고에 대한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채무에 대하여는 채권액 전액 또는 채권액을 넘는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C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C와 U를 제외한 채권자들이 모두 P은행, O조합 등 금융기관이고, 통상 금융기관은 담보 부동산의 가치를 고려하여 채권액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를 제외한 채권자들은 모두 담보를 확보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2017. 3. 21. 재산분할 대상인 별지 목록 1 내지 3항 기재 부동산에는 모두 O조합과 P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위 근저당권들의 채권최고액 합계는 1,728,000,000원이고(O조합 1,356,000,000원+P은행 372,000,000원)이고, 금융기관들이 통상 채권액의 120%를 채권최고액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담보채권액 합계는 1,440,000,000원으로 추정되는데, 위 재산분할 대상 부동산들의 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재산분할 대상 부동산들의 가액 합계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합계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

③ 2017. 3. 21. 재산분할 대상 부동산은 당시 C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은 아니었고, C은 위 재산분할 대상 부동산을 제외하고도 아무런 담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을 포함하여 17건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당시 C 소유의 부동산의 시가를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나, 2017. 3. 21. 이전 또는 이후의 거래가액, 감정평가액, 공시지가 등으로 추정할 수 있는 재산분할 대상 부동산 제외 C 소유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가 3,445,433,649원에 이르고(아래 표 참조), 당시 C의 채무가 3,196,000,000원인데 원고에 대한 채무 360,000,000원을 제외하고는(원고에 대하여는 3,000만 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됨) 모두 채권액 전액 또는 채권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점, 통상적으로 부동산의 시가는 공시지가를 상회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C이 2017. 3. 21. 재산분할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다거나 2017.

3. 21. 재산분할 이후 채무초과상태가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김해시 M 답 2631.4㎡	557,200,000원6) 2017. 4. 19. 매매 거래가액(갑 제5-3호증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창녕군 Q 임야 71071㎡ 중 지분 8926/71071	215,000,000원7) 2015. 2. 15. 매매 거래가액(을 제3-1호증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3	R 임야 640 m ²	516,480원 (2017년 공시지가)
4	S 임야 657 m ²	530,199원 (2017년 공시지가)
5	T 임야 710m ²	572,970원 (2017년 공시지가)
6	이 사건 D 토지	128,856,000원8) 2020. 11. 16. 기준 감정평가액(갑 제16호증, 이하 나머지 이 사건 L리 토지들도 같다)
7	이 사건 E 토지	337,194,000원
8	이 사건 F 토지	469,476,000원
9	이 사건 G 토지	5,520,000원
10	이 사건 I 토지	7,686,000원
11	이 사건 J 토지	114,872,000원
12	이 사건 K 토지	18,630,000원
13	이 사건 L 토지	1,380,000원
14	김해시 V 임야 11408㎡ 중 지분 3355.4/11408	480,000,000원9) 2016. 3. 25. 매매 거래가액(을 제3-5호증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5	W 전 168㎡	8,000,000원10) 2016. 10. 20. 매매 거래가액(을 제3-6호증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6	X 목장용지 4939m ²	1,100,000,000원11) 2016. 3. 25. 매매 거래가액(을 제3-7호증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합계	3,445,433,649원 (추정)	

④ C과 피고는 1998. 2. 11. 혼인하여 2017. 3. 21. 이혼하기까지 19년이 넘는 혼인 생활을 하였고, 2017. 3. 21. 무렵 피고 소유의 부동산은 김해시 Z건물 AA호(근저당권자 AB조합, 채권최고액 345,000,000원), 김해시 AC에 있는 AD빌딩 제1층 AE호 공유지분 5분의 4(근저당권자 P주식회사, 채권최고액 372,000,000원)이 있었으며, 2017. 3. 21. 재산분할로 C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부동산을 이전하기로 하였는데, 위 재산분할 대상 부동산들에 대하여 각 O조합과 P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728,000,000원(O조합 1,356,000,000원+P은행

372,000,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이 중 P은행에 대한 대출채무의 채무자는 피고이고, C은 물상보증인이다), 위 재산분할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2017. 8. 21.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1) 갑 제5-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이 2017. 3. 21. 재산분할 이후인 2017. 4. 19. 김해시 M 답 2631.4m²를 AF, AG에게 557,200,000원에 매도하여 적극재산이 감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017. 8. 21. 재산분할에 의하여 C이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2) 그러나 한편,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 즉 C이 매도한 김해시 M 답 2631.4m²은 당시 C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매도 당시 위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O조합, 채권최고액 840,000,000원 및 채권최고액 144,000,000원인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C은 위 재산분할 대상 부동산을 제외하고도 아무런 담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을 포함하여 15건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에, 앞의 다.의 3)의 나)항에서 인정한 사실 내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위 1)의 사실만으로 2017. 8. 21. 재산분할로 인하여 C이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켰다거나, 위 재산분할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다는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윤성열

판사이학근

판사강은지

별지

1) 조정내용에는 김해시 M 답 2631.4m² 부동산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되었으나, 피고는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고, 원고도 이 사건에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는 논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은 제외하고 본다.

2) 위 순번 3,4 토지와 공동담보

3) 위 순번 10 내지 17 토지와 공동담보

4) 2016. 4. 15. 1,075,000,000원 차용하고 일부 원금 상환하여 2017. 3. 21. 기준
885,000,000원(갑 제11-7호증)

5) O조합에 대한 피담보채권액에 관한 증거가 없으나, 원고에게 유리하게 조합에 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합계를 채무액으로 가정한다.

6) 2017. 4. 19. 매매 거래가액(갑 제5-3호증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7) 2015. 2. 15. 매매 거래가액(을 제3-1호증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8) 2020. 11. 16. 기준 감정평가액(갑 제16호증, 이하 나머지 이 사건 L리 토지들도 같다)

9) 2016. 3. 25. 매매 거래가액(을 제3-5호증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0) 2016. 10. 20. 매매 거래가액(을 제3-6호증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1) 2016. 3. 25. 매매 거래가액(을 제3-7호증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